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3가단1334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담당변호사 육삼신

피 고 B
소송대리인 C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판 결 선 고 2024. 11. 21.

주 문

-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1. 4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1. 5. 11. 접수 제685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(갑1 내지 갑13의3)

-원고는 D과 사이에 2021. 1. 20. D이 E 저축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E 저축은행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-D은 2021. 7. 25.부터 E저축은행에 이자 등을 연체하여 E저축은행은 2021. 10. 22.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, 원고는 그에 따라 2021. 12. 2. 보험금 10,340,398원을 지급하였다. 원고의 2023. 12. 6. 기준 D에 대한 채권액은 12,254,888원이다.

-D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을 모인 피고에게 2021. 4. 2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1. 5. 11. 접수 제6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-D은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, 2021. 8. 20.경 118,616,053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매매계약체결 및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이다.

2. 판단

-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,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39560 판결).

-원고의 채권은 2021. 12. 2. E저축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D 사이에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

채 되지 않은 2021. 7. 25.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해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, 실제로 원고가 가까운 장래인 2021. 12. 2. 보험금을 지급하여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.

-무자력인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모인 피고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,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-그렇다면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4. 25.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21. 5. 11. 접수 제6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.

판사 오성우

별지